

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.

&nbsp; <P class=HStyle0>본건 토지수용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의 이전용지로 하기 위함이요 위의 역청공장은 서울특별시의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원료인 역청을 생산한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수용의 공용의 목적으로서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니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63.10.31 선고 4294행사128 판결)</P>